

第 59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 '96. 1. 10. ~ 1. 1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1996 • 1 • 통권 제46호

I.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	3
II.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9
III.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9
IV. 부 록	
▶ 의사일정(안) .....	27
▶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	29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5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3
▶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	95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1월 10일(수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5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교육감 인사
5. 폐식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1시 00분 개식)

###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개 회 사

(11시 01분)

### ● 의장 박재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계 인사 여러분!

오늘은 병자년 새해에 들어 첫번째로 본 도 교육위원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뜻 깊은

[ 제59회-개회식 ]

날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교육 개혁의 진운이 힘차게 전개될 것으로 예견되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더 더욱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10일, 11일 양일간의 회기로 교육감님으로부터 새해 충북교육의 주요업무 내용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초등학교로의 개칭 및 가칭 용암여자고등학교 설립 등 일련의 교육현안문제들을 심의·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켜보면 엄청난 시련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세계 10대 뉴스를 장식하는 대형사고와 과거 청산의 회오리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슬기롭게 대처하시며 제2대 교육위원회의 출범과 민선 교육감 선출 등 활기찬 충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95년의 충북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창의·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4대 주요시책 추진에 진력하여 괄목할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국가적 소명에 걸맞게 교육 바로 세우기에 힘과 슬기를 모을 때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충북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금학년도 본도 교육목표인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실천 위주의 인간교육과 개방화·정보화에 대응하는 교육, 질 높은 교육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 신장, 학교 단위 자율적 경쟁체제의 확립, 교실의 현대화와 교단의 선진화 등 본도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역점 시책의 추진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일사불란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지고한 목표를 향하여 주체적인 사명감을 갖고 교육의 길을 걷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견인차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신교육개혁 추진이 보다 구체화,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총론이 아닌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각론을 논하고 백가쟁명하는 여론을 수렴, 대안을 수립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새해 벽두가 되면 누구나 예외없이 새로운 변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육위원님들이 땀흘려 뿌리내려 주신 교육자치가 무성하게 잎과 꽃을 피워 교



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며 특색있는 지방교육의 다양화와 다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2대 교육위원들이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교육성도의 길을 옳게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교육은 미래의 국운을 가름하는 유일한 처방이며, 이는 오직 교육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소임의 막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을때 15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것이며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높은 사명감으로 부여된 소임에 전심전력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의안심의를 통하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1만 3천여 교육가족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살살이 찾아 치유하고 굽어 주실 수 있는 교육의 병을 고치는 명이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교육가족 여러분 댁내 만복과 번영을 송축드리며 대망의 병자년을 맞는 첫 교육위원회의 개회사로 같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월 10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박재현.

● 의사과장 강인형

다음은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

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교육감 인사

(11시 08분)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병자년을 맞이하여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교육위원으로 재임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북교육 발전의 견인차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저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셨고 더욱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도래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이 변화된 질서속에서 거센 도전과 치열한 경쟁을 예견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교육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도움없는 국가발전은 불가능했으며

[ 제59회-개회식 ]

개인의 삶의 질 또한 교육없이는 향상시킬 수 없었기에 미래의 승리가 되기 위한 힘의 원천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도 이제까지의 교육관행과 의식을 가지고는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없으며 교육개혁 없이는 21세기의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뜻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본도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지표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중점방향을 설정하여 이미 제시된 충북교육의 10대 비전을 구현코자 합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인간교육은 오도된 가치관과 실추된 도덕성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첩경이기 때

문에 체계적인 인성교육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의 지식중심교육에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전환이 요청되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의 본질추구는 새로운 노력의 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지적자산은 개인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도적 요체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길러 내어 세계의 젊은이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한 곳에 모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질높은 교육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을 신장 시키겠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교육으로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바탕 위에서 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양적 성장만을 강조했던 지난 날의 교육을 반성하고 창조성과 실용성, 다양성과 개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능력중심의 교육과 함께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단위의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학교경영과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사고에 바탕을 둔 특색있는 학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따르는 책임의식 고취와 함께 경쟁적인 학교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결과가 교육여건에 따라 결정됨은 역사적 교훈이므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함께 교실 공간을 학습자료실화 하고 특색있는 교실을 설계·시공하여 열린교육, 즐거운 교실을 운영하며,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폭력추방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며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운영과 병행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금년을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여섯째, 교단 우선의 교육행정 구현에 노

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 재정운영은 교실과 교단의 지원에 맞춰져야 하며 따라서 현장 우선의 지원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교원존중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교원의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 등 교단 우선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교육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므로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잘못된 관행과 타성을 일소하고 획일적·폐쇄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어 왔던 닫힌 교육체제를 개방과 창의성, 전문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무한한 잠재적 소질과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정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충북교육의 곳곳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중 이러한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충

[제59회-개회식]

북교육의 증흥을 기필코 이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도 조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신뢰와 화합속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김영세.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사과장 강인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20분 폐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1월 10일(수요일) 11시 20분

## 議事日程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6학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웅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6. 기타안건처리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996학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웅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20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9회-제1차]

1. 경과보고

(11시 2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1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6-1호로 긴급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55회 정기회와 제57회 및 제58회 임시회에서 각각 의결한 '96년도 예산안등 의안 7건이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서 처리되었으며 그중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고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청의 관리국 운영비중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경비 900만원과 공무상 재해보상금 2억원,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비중 단재교육원증축비 3억원과 응급재해복구비등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원등 총 8억 90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의결되었고,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의 청주시구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이 삭제되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등 3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95년 12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미 각 위원님들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23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2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김근학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과 교육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청북도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없어요, 배부가 안됐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박재현

미안합니다, 잠깐.

(사무직원 유인물 가져와서 배포)

● 부교육감 김근학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쪽의 도세는 생략토록하고 둘째쪽의 행정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본청은 3국 3담당

관 10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등 7개의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학교수는 총 865개교이고 29만 4천여 학생을 1만 3천여 교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589억원으로서 자체수입은 8%에 불과하고 세출은 인건비가 77%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시책으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강화, 학교운영의 자율성보장, 질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교육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도덕교육으로 매일 한 덕목씩 지도하도록 하고 경로효친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뿌리찾기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화 시키기 위하여 다학년 집단 야영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9회-제1차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실천되도록 기초학력을 정착시키고 학습부진아를 책임지도 하겠으며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충자율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전일제 특별활동을 활성화 시키며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바른 심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와 소질 중심의 다양한 클럽활동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다채롭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학급회,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 학생회의 자율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교육과 우리 문화의 정책성 확립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충북정도 100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고취와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식을 새로운 사고로 전환시키고 지역사회의 교육욕구를 수

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시범 실시하고 학교 공동체 구축과 새로운 학교 경영평가로 특색있는 우수 학교를 지원하며 전통있는 학교 육성과 열린교육, 즐거운교실 운영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교단 우선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전환을 하고 인화 중심의 민주행정의 실현으로 교직원간의 화합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교 운영비를 대폭 증액 지원하는 등 현장 우선의 지원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자질함양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고 연수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연구원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등 일선학교를 도와주는 장학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교육감과 장학 기회를 마련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직장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인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함께 능력중심 인사로 교직원의 사기를 양양시키며 우수 교사를 발굴하여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스

승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원존중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과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지역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입식 교수 학습방법에서 학생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최적 교수 학습모형으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고 표집학력고사 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과학 기술 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탐구중심의 기초 과학교육에 힘쓰고 과학교육원을 구 교동학교로 신축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고 2·1체제의 내실을 기하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본도 개최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첨단 실습시설과 기자재 구입에 총 39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2,200여대를 보급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시켜겠습니다.

세계화·정보화 사회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조기 영어 기반을 조성하고 최첨단 어학실을 10교에 설치하여 생활외국어 교육 중심으로 운영 하겠으며 외국 학생과의 결연 및 방문교류를 적극 권장하여 국제 이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실현대화 4개년 계획을 수립, 매년 50억원씩 20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교육의 선진화 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교직원 사택 90동을 정비하는 등 학교 시설 설비를 현대화하고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초·중학교 학급당 40명을 목표로 수용 능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유치원 독립원사 5개원을 신축하고 특수학교도 2개교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시설을 확충시켜 편리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학교 급식을 49개교 확대하는 등 학생 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실, 휴게실 및 강의실을 확충하여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으며 공공도서관과 학생회관 학교시설 등을 지역사회 문화센터

로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정화로 면학풍토 조성을 위하여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한편 학교 폭력 근절 범국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학생 위주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지도체제를 구축하고 교외생활지도 상설 캠프를 운영하며 실천중심의 환경보존 교육을 내실화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참조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11시 37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용암여자고등학교설립계획안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평소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일내지 3일씩 확대 조정하였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 수행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계속적인 초과근무등 경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위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기타 창안, 제안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의 기여등 교육감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등입니다.

다섯째,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근속휴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장기근속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 휴가를 허가하되 재직중 1회에 한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 20년 경과 공무원은 '96년부터 '98년 사이에 장기근속순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 대통령령 제14,825호 1995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4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학교신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분교장 개편 및 폐지, 지적정리에 따른 교명 변경과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69호로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3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제안근거로는 교육법 제8조, 제75조, 제81조, 제82조, 제85조 등과 '96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1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과 제2조 도립학교 명칭과 위치의 별표1,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1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제2항 충청북도학원 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

[ 제59회-제1차 ]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각각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4쪽에서 5쪽까지 별표1 고등학교, 6쪽에서 9쪽까지의 별표3 중학교, 10쪽에서 21쪽까지 별표4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러면 23쪽의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는 6개교로서 청원군에 오창고등학교, 청주시에 원봉중학교, 수곡중학교, 용암초등학교, 상당초등학교, 제천시에 신백초등학교가 신설되며, 둘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른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는 청원군의 기암초등학교외 6개교이고 폐지되는 분교장은 충주시의 노은초등학교 수릉분교장의 8개 분교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셋째 학교 위치가 택지개발 지구내의 ब्ल럭에서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는 충주시의 용암중학교외 3개교가 되겠습니다.

25쪽의 넷째 행정구역과 학교명칭이 다른 충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위치한 산남국민학교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크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낸다는 뜻으로 한솔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69호로 교육법 제8조, 제75조, 제81조 등의 개정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는 학교는 본교 272교, 분교장 39개교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의 3건이며 그 내용은 부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7쪽에서 31쪽까지 신·구대비표, 33쪽에서 35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36쪽에서 37쪽까지 관계법령발체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폐합되는 9개교 196명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 5개교, 통학비 및 하숙비 지원 각 1개교, 기존의 통학버스 이용 2개교로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가칭 용암여자고등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청원지역의 '9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은 남자 6,238명, 여자 4,924명, 합

계11,162명이나 동지역의 '97년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남자 6,466명, 여자 6,193명, 계 12,659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남자 249명, 여자 420명, 계 669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남자는 기존학교의 학급조정등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여자는 기존학교의 학급 과대 및 수용시설 부족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 용암 택지개발지구내에 고등학교 용지로 시설 결정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번지 13,745.8평방미터 부지에 총 9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학년당 10학급 규모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9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설립하고자 하며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금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용암여자고등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 별첨5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48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안병일, 신용철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안병일, 신용철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의 산회후 오후 2시부터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제59회-제1차]

○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 별첨2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3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4
- ▶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 별첨5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1월 11일 (목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4. 기타안건 처리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4. 기타안건 처리

(11시 02분 개의)

###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암여자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 ● 의장 박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조일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본 위원이 그 설치조례안을 제가 받고 나름대로 자료를 좀 수집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보다 개정안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작은 뜻에서 제가 또 이 자

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산남동에 소재하는 한솔 초등학교라는 지명 학교명, 그리고 용암동에 설치하는 원봉중학교, 이 두 학교의 지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학교명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성명이고 그 성명은 바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지역은 지명이 죽일 죽일, 죽이, 그러니까 대나무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간다해서 죽일 죽하나, 그런데 한글로 표현해 보니까 죽일면 죽인다 이거여, 그래서 그쪽의 행정 지명을 거꾸로 바꿔서 일죽이라는 말로 바꾸고 이런 지역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솔이라는 말은 대단히 이제 어감도 좋고 상당히 바람직한 이름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사전을 찾아 봤더니 사전에도 없고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학교명을 작명할 때는 물론 지역청에서의 충분한 검토 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작명을 할 때는 충분한 기초, 역사성이라든가 이러한 충분한 고려가 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좀 밝혀 주시며는 앞으로 본위원회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한솔같은 이름은 제 나름대로 한 한발해서 큰 소나무



다, 뭐 이런 뜻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또 저희 사회에서 한술이라는 것은 아이들 이름 이런 쪽에도 상당히 통용이 잘되는 이름입니다.

대단히 그 이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시다마는, 본 한술이라는 뜻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작명이 됐는가, 또 용암동에는 원봉중학교는 어떤 역사성이나 기타 어떤 연유에서 원봉중학교라고 작명을 했으며 원봉이라는 그 이름이 뜻한 바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를 분교로 개편하면서 그 지역의 교통 편의내지는 우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숙까지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초등학교 학생이 부득이 하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숙. 그래서 어떠한 지역을 하숙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하숙을 우리가 편의를 제공했을 때에 기대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학교 통학버스나 기타의 방법으로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안전에 나온대로 7개교를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분교장으로 개편을 하는 과정에 현행 시행령에 의하며는 50명 이하일 경우에 또는 세학급을 복식수업을 할 경우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명이상이 되

는 학교가 세 학교나 있습니다.

52명, 53명, 62명, 제가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넘은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이 됐을 때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가, 또 이 기준이 넘는 데도 분교장으로 개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집행청에 관리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수요자의 절대절명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개편안이 이루어 졌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시간을 주십시오”하고 말함)

답변 준비상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 의장 박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문제를

[ 제59회-제2차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남국민학교와 원봉중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거나 제정할 때에 이유가 무엇이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한솔이라는 뜻은 명사위에 붙어서 “크다”, “바르다”, “가득하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 한자와 그 학교 주변에 수백년이 된 노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뜻하는 “솔”자를 합해서 “한솔”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크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뜻으로 한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학교 관계자와 지역교육청에서 그 산남동의 유지와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교명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의를 한 결과 이런 한솔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한솔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봉중은 그 원봉이라는 것이 그 본래의 지역명은 원마루입니다, 원마루.

일명 원마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명이.

그래서 그 원마루가 원봉인데 한문으로는 원봉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원봉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명칭을 따서 거기에는 용암은 또 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마루, 그 지역에 자연부락의 명칭을 따서 원마루인 원봉중학교로다가 이름을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의 주민들과하고 상의를 했고 지역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갖고 교명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봉으로 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에 통폐합에 따라서 50명이 넘는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혹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여기 조사한 거는 네학교가 됩니다, 세학교가 아니라.

이 기암국민학교, 금괴국민학교, 상야국민학교, 오생국민학교, 네학교인데 이 통폐합이 될 때 즉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독립교로 그냥 놔둘 때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에 그 지역교육청에서 그 학교 학부모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폐교가 될 때에 학생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 버스를 대주거나 아니며는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며는 하숙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학비를 지원해주는 학교는 제천 청풍국민학교 금산분교장입니다.

요 금산분교장이 지금 1학년, 4학년, 5학년 학생이 이번에 하숙비를 지원하게 된 학생인데 금년에 이제 3월달에 개교를, 아니 저 애들이 3월달에는 2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폐교를 할 때에 1학년, 4학년, 5학년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3월 1일자로 2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는데 여기는 버스로 통근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3명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저희들이 대줄 수도 없고, 거리상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하고 그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부모님들이 하숙비를 지원해다구. 그래서 월 15만원씩 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숙비를 지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술이라는 학교이름은 한문으로 어떻게 표기되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한글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러니까 한문은 표기가 안되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이 안건을 제가 받을 때 보며는 상당히 촉박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어떤 안건을 주셨을 때에 제안설명 하는 정도의 안건이라도 미리 주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지 않고는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거나 하더라도 상당히 의안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안건을 앞으로 주실 때는 충분한 자료제공. 그러니까 지금 하숙을 시킨다. 버스가 안들어 간다. 15만원으로 족하나, 액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숙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가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도록.

두번째,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어저께 상정해 놓고 오늘 이거를 처리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며는 적어도 농촌학교라고 해서,

(청취불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우편은 받았습시다 우편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농촌학교를 통폐합한다. 한번 우리가 폐하기는 쉬워요. 이 농촌이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한 농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키느냐, 학교가 교육의 기관뿐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의 기관도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본



[제59회-제2차]

위원이 지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청에서 올라온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느냐,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지난번 진천교육청에 삼산국민학교설립폐지안, 그것을 했을 때에 본위원이 2차에 걸쳐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준 자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마 이러한 것은 이들 농촌학교를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 대단히 중요한 사항. 적어도 우리가 교육을 경제로만 따지는 돈으로 따진다면 제일 쉬운 게 됩니까?

청주시내 전부다 학교 하나로 모아서 통학 버스하고 하면 제일 쉬울 겁니다.

규정이 50명이상은 존재할 수 있다 하며는 되도록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수요자가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 농촌,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육자 스스로가 앞으로 계몽하고 농촌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 설 용의는 없는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곱개 학교가 충북에서 또 분교장으로 격하된다. 그마만큼 우리 일곱개 지역에 학교가 있었던 것은 문화적으로 그 지역에 사회적으로의 중추적인 기능을 잃어 버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충분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가족들이 주선해서 교육을 마치 생

선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처럼 이것이 경제적 이익이다. 그래 농촌 사람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의무교육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시간을 충분히 법정 기일내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일을 어제 상정을 하고 오늘 답변을 들어가시고 통과를 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로서는 법정기일 내에 충분히 이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금 통폐합 문제는 충북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방침이 적은 학교에서 학교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라면 차라리 통폐합을 해가지고 좀더 나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원 취지입니다.

저희가 충북이라고 해서 학교를 자꾸 없앨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그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방침이 이렇고 하니까 어떻겠느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보충을 드리며는 제가 의안이 늦게 왔다가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물론 형식에 의해서 이 안을 줍니다마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안 하나가지고는 이 안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자료를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뜻입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자료를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좀 미비한 거는 그럼 잘못됐습니다마는 한건 한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 자료가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경윤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저 그 용암국민 학교에 월 하숙비를 15만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다가 지급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학부모한테

● 이경윤 위원

학부모한테 직접?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이경윤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하숙비를 하숙집하교의 관계를 가지면서 직접 지급을 하는 구만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 이경윤 위원

몇명이죠, 그게?

● 관리국장 신재철

세명입니다.

● 이경윤 위원

2학년에 한명.....

● 관리국장 신재철

1학년에 한명, 4학년.....

● 의장 박재현

5학년이 된답니다.

● 이경윤 위원

그럼 한명 한명 세명이구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4학년, 5학년.

● 이경윤 위원

애네들이 어느 학교로 가는 거죠?

●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청풍국민학교로 갑니다. 금산분교장에서.

● 이경윤 위원

[제59회-제2차]

예, 알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참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나 또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위원 모두 침묵)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 설립계획안**  
 (11시 31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암여자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암여자고등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폐회)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운.

0 출석공무원 : 15명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이기수.

(별첨1)

# 議 事 日 程(案)

第59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6.1.10-1.11(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96.1.10(수) 10:00</p> <p>11:00</p> <p>14:00</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p> <p><input type="checkbox"/> 개회식</p> <p>[제1차 본회의 개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6.1.10-1.11(2일간)</li> <li>2.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li> <li>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li> <li>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li> <li>5.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제안설명)</li> <li>6. 기타안건 처리</li> </ol> <p>[제1차 본회의 산회]</p> <p><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 설립예정지</p>	
<p>1. 11(목) 11:00</p>	<p>[제2차 본회의 개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li> <li>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li> <li>3.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li> <li>4. 기타안건 처리</li> </ol> <p>※ 폐회</p>	





(별첨2)

1996 年度

# 主要業務計劃

忠清北道教育廳

# 目 次

- I. 一般現況 ..... 31
- II.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 35
- III. '96 主要業務計劃 ..... 36

# I. 一般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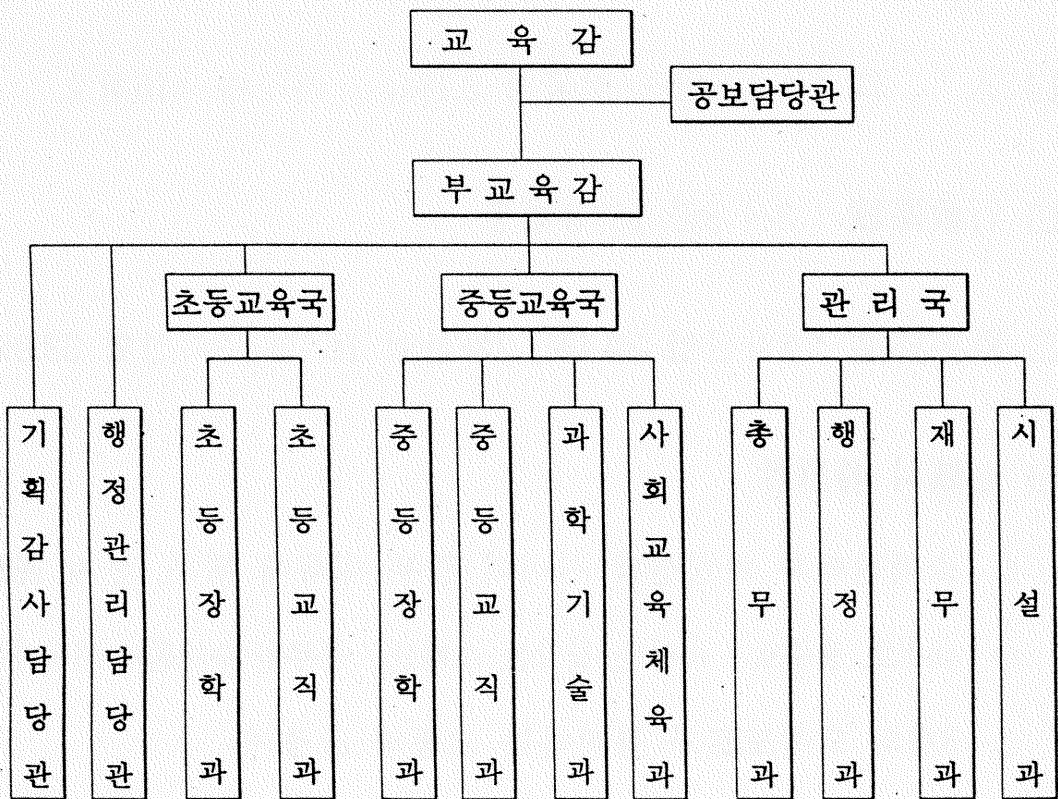
## 1. 道 勢

- 面 積 : 7,439km<sup>2</sup> (전국의 7.5%)
- 人 口 : 1,425천명(전국의 3.1%) / 가구수 416천호
- 行政區域 : 3시 8군 163읍면동
- 就業構造 : 1차산업 29.4%, 2차산업 16.7%, 3차산업 53.9%
- 地域의 特殊性
  - 소백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의 중부 내륙에 위치, 산지 79%
  - 대청호, 충주호 /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 풍부한 수자원과 관광자원
  -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
  -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첨단 산업시설 및 농·공단지의 확장
  - 충·효·예를 숭상하는 교육·문화의 고장
  - 세계 最古의 인쇄문화 발상지 : 청주 興德寺址
  - 이농 현상에 따른 농촌학생 감소

## 2. 行政 組織

### □ 機 構

- 본 청 : 3국 3담당관 10과
- 직속 기관 : 7
- 지역교육청 : 11



### □ 公務員 定員

'96. 1. 1 현재

계	정무직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16,575	1	13,305	213	1,057	1,999



### 3. 學校 現況

'96. 1. 1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865	8,025	294,564	13,305
유 치 원	382	720	18,520	810
초 등 학 교	283	3,859	122,587	5,148
중 학 교	114	1,761	79,202	3,706
고 등 학 교	73	1,471	68,413	3,394
방송통신고등학교	3	18	791	.
산업체부설학교	2	39	2,016	53
특 수 학 교	8	124	1,207	194
특 별 학 급	(4)	33	1,828	.

### 4. 學校法人 現況

'96. 1. 1 현재

법인수	학 교 수					교 원 수	학 생 수
	계	초	중	고	특수		
24	43	1	20	20	2	1,628	38,610

### 5. 社會教育機關 現況

'96. 1. 1 현재

계	공공도서관	학생회관	학 원	과외교습소
2,543	14	1	1,688	840

## 6. 財政 現況

□ 세입·세출 예산 총액 : 558,98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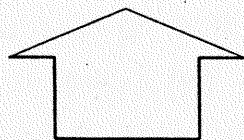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
세 입	의 존 수 입	512,522	91.69
	·국 가 부 담	512,457	91.68
	·일 반 회 계 부 담	65	0.01
	자 체 수 입	46,461	8.31
	·교육비특별회계부담	46,298	8.28
	·주 민 부 담	163	0.03
세 출	인 건 비	432,340	77.34
	교육행정비 및 사업비	14,981	2.68
	학 교 비	43,859	7.85
	사 학 지 원 비	38,968	6.97
	시 설 비	24,764	4.43
	예 비 비	4,071	0.73

## II.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 教育指標

세계화를 主導하는 創意的인 人材育成



### 教育施策

1. 實踐爲主의 人性教育 強化
2. 學校運營의 自律性 保障
3. 質 높은 教育으로 競爭力 伸張
4. 快適하고 便利한 教育環境 造成

### Ⅲ. '96 主要業務計劃

#### 1. 實踐 爲主의 人性教育 強化

##### □ 바른 價値觀 形成으로 道德性 涵養

-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도덕교육 : 1일 1덕목 실천
  - 기초질서, 공동체의식 교육 / 민주 시민교육 / 세계 시민교육
  -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적 활동 : 대화·토론·상담
- 경로 효친교육 강화 : 뿌리찾기 교육
  - 예절교육 : 기본예절 / 예절실 설치 / 생활관 중심학교 운영
  - 효경의 날 운영 : 웃어른·스승 존경 교육
-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 형성 : 바른 심성계발
  - 청소년 단체 육성 : 1인 1단체 가입 / 1교 1준거집단 활동
  - 다학년 집단 야영활동 / 사회의 학교화운동 / 생활개혁과제 실천

##### □ 教育課程 中心의 學校教育

- 기초학력의 정착
  - 학습부진아 책임지도 : 한글·연산 기초 지도 / 학습예고제 운영
  - 독서교육의 강화 : 교실의 독서실화 / 필독도서 권장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학년담임제 / 교과담임제 / 순회교사 및 시간제교사 운영
  - 보충·자율학습 방법 개선 /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 일반화
- 학교체육활동의 활성화
  - 체육교육의 내실 : 1교 1기, 1인 1운동 / 학교행사의 축제화
  - 생활체육 학교간 경기대회 : 초 → 씨름 / 중 → 농구 / 고 → 배구



## □ 特別活動 運營의 活性化

### ○ 現場체험 중심의 教育활동

- 전일제 특별활동·상설특활반 운영 : 자원인사 적극 활용
- 소풍·수학여행의 탄력적 운영 / 예·체능 발표기회 확대
- 봉사활동 강화 : 사회 복지시설 방문 / 불우 이웃 돕기

### ○ 취미와 소질 중심의 다양한 클럽활동

- 학생의 소질·창의성 신장 :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教育활동 다양화 : 중심학교 지정 / 우수사례집 발간

### ○ 학생회의 자율 능력 신장

- 학급회·학생회 활동의 다양화 /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 공동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 교내 행사 적극 참여

## □ 傳統文化的 繼承 發展

### ○ 나라 사랑교육 강화

- 국기·국가에 대한 교육 / 우리 고전읽기의 생활화
- 우리 문화 정체성 확립 : 충청문화 순회답사 / 조국순례 대행진

### ○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 우리고장 위인·선열의 얼 교육 : 「충북의 선비정신」 활용
- 「충북 100년 기념행사」 참여 : 도민 화합 및 축제의 한마당

### ○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

- 자유 민주주의 우월성 고취와 통일의 당위성 교육
-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 / 올바른 통일관 정립 지도

## 2. 學校運營의 自律性 保障

### □ 學校單位 自律經營體制 確立

- 학교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식전환
  - 교장·교감 연찬회 8회 / 교육발전 토론회 개최
  - 투철한 교육관 / 발전적 사고 / 연구하는 자세 / 신뢰성 회복
- 지역사회 교육 욕구를 수렴하는 학교경영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 교육수요자의 여망에 부응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
  - 새로운 학교경영 평가 : 특색있는 우수학교 지원
-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육성
  - 전통있는 학교육성 : 「1교 1전통 가꾸기」, 「좋은 우리학교 만들기」
  - 열린 교육·즐거운 교실 : 시범학교 운영, 우수 사례집 발간

### □ 敎壇 優先의 教育行政 具現

- 학교장 중심의 교육행정
  -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 : 창의성 발휘, 책임의식 고취
  - 학교장 재량권 확대 : 교과선택, 학사운영, 도급경비 확대
- 인화 중심의 민주행정
  - 의사결정의 민주화, 공개행정의 구현
  - 교직원간의 화합과 협력분위기 조성
- 현장 우선의 지원행정
  -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 교당 40%, 급당 20%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 운영 : 각종 교육 규제의 최소화

## □ 敎員의 資質涵養으로 專門性 提高

### ○ 敎원연수의 다양화와 연수방법의 개선

- 각종 연수 4,793명 / 敎원 석사과정 특별연수 / 현지 어학연수
- 참여식·현장 위주의 자율 연수 / 자기연찬 풍토 조성

### ○ 敎育행정 의 전문성 제고

- 敎育전문직 연찬회 / 연구하는 풍토 조성 / 봉사행정 확산
- 현장연구원제 운영 : 초·중등 敎원 및 敎育전문직

### ○ 敎育과정 중심의 장학활동

- 敎단중심의 장학활동 : 敎내 자율장학의 내실 / 모범사례 발굴
- 요청장학체제 구축 : 지도 조언 / 자료 및 정보 제공
- 「장학정보실」 운영 : 장학자료 적극 활용

## □ 敎員의 士氣 振作

### ○ 즐거운 직장 만들기

- 「敎育감과 대화의 날」 운영 : 敎育감실 개방, 폭넓은 의견수렴
- 훈훈한 인정 나누기 운동 전개 / 직장 동호인 활동 지원

### ○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

- 인사자료 공개 10종 / 敎育전문직 공개전형 임용
-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 인사로 敎직원 사기 앙양

### ○ 敎원 존중 풍토 조성

- 성실한 敎원 우대 : 우수敎사 발굴, 해외 연수기회 확대
- 특별 상여수당 지급 / 명예퇴직제 확대 / 스승 찾아뵙기 운동

### 3. 質 높은 敎育으로 競爭力 伸張

#### □ 個性과 素質을 살리는 個別化敎育

##### ○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 특수 재능아 연계교육 : 지도 기록카드 활용 및 이관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 심화·보충지도의 충실

##### ○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 영재교실 운영 / 속진제 도입 / 심화발전 학습프로그램
- 특수목적고 운영 내실 /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 ○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직업교육 확대

- 진로지도의 체계화 / 진로 판단 권고제 / 진로상담실 운영
-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반 운영 : 3계열 18교 732명

#### □ 敎授·學習과 評價方法의 改善

#####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토론·탐구·실험 실습 / 고등정신 개발 문제해결 학습
-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

##### ○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 최적 교수·학습모형 / 교과 연구회 활성화
- 교육 효과의 극대화 / 수업연구대회 확대 운영
- 첨단 학습기자재 활용 :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

##### ○ 평가방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 목표지향 평가 : 진단·형성·과정평가 / 시상의 다양화
-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기록
- 수학능력 평가의 정착 / 표집학력고사 제도 개선



## □ 科學·技術·情報教育의 充實

### ○ 탐구 중심의 기초 과학교육

- 과학교육원 신축이전 추진
- 실험·실습비 증액 / 실험보조원 확대 / 과학교구 확충(90%)
- 학교과학관 운영 방법 개선 : 활용 극대화

### ○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

- 공교 「2·1체제」 내실 / 첨단실습시설 23억원 / 공동실습소 3개소
- 전국 기능경기대회 : 1인 1자격증 취득 / 첨단 기자재 16억원

### ○ 정보화 사회 대비교육

- 교육용 컴퓨터 2,255대(26억원) / 컴퓨터 연수 강화
-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 : 영재반 운영, 교원 동호클럽 조직

## □ 時代 變化에 對應하는 教育 強化

### ○ 초등학교의 조기 영어교육 기반 조성

- 학생 : 방과 후 상설 영어반 운영 / 학교 재량시간 활용
- 교원 : 현지 어학연수 / 영어담당교사 연수 / 지도자료 개발

### ○ 생활 외국어교육 강화

- 원어민 강사 초빙 확대 / 최첨단 어학실 설치 10교 3억원
- 제2 외국어 회화교실·순회교사제 운영 / 다국어교육 강화

### ○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 외국 학생과의 결연·방문교류 권장 / 세계화 교육자료 발간
- 우리 문화 바로 알리기 / 외국 문화 바로 알기 교육 강화

## 4. 快適하고 便利한 教育環境 造成

### □ 教室의 現代化, 敎壇의 先進化 推進

#### ○ 학교교육 선진화 계획 추진

- 교실 현대화 4개년 계획 : 매년 50억원씩 총 200억원 투자
- 교실공간의 학습자료실화 / 특색있는 교실 마련

#### ○ 학교시설·설비의 현대화

- 교실 증·개축 / 난방개선 4,124실 / 전기 시설 개수
- 노후 책걸상 교체 28,407조 / 교직원 사택정비 90동

#### ○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 교육행정 전산망 : 3단계 8억 7천만원 ('97 전 기관 설치)
- 교육정보 공동 이용 / 공문서 수발 전산화 / 교원업무 경감

### □ 均衡있는 學校發展 圖謀

#### ○ 학생 수용능력 균형유지

- 학교 신설 5교 / 학교 이전 1교 / 소규모학교 통·폐합 16교
- 초·중학교 과밀학급 완화 : 급당 40명 목표

####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학지원

- 재정지원 : 46교 380억원(운영비 365억원, 시설비 15억원)
- 교원명예퇴직 수당 지원 / 사립교원 특별채용

#### ○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 유치원 : 독립원사 건립 5원 / 종일반 운영 확대
- 특수학교 : 학교 이전 2교 / 중등과정 설치 2교 / 직업교육 강화

## □ 教育 福祉施設 擴充

### ○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학교급식 확대 49교 (92.5%) / 양호실 설치 24교 (97%)
- 급수시설 확충 / 화장실 개량 / 기숙사 운영

### ○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연구실 및 강의실 확충 / 자율 출·퇴근제 시범 실시
- 교무실 사무자동화 : 컴퓨터, 복사기 등 19억 7천만원

### ○ 지역사회 문화 센터로서의 교육시설 활용

- 공공도서관 : 취미교실, 이동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 학생회관 / 수영장 / 체육관 / 학교 시설 개방 / 야영장

## □ 學校周邊 淨化로 勉學風土 造成

### ○ 학교 폭력근절 범 국민운동 전개

- 학교 폭력추방 대책반 운영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 강화 : 청소년 교육용 프로그램 보급

### ○ 학생 위주의 생활지도

- 협동 지도체제 : 『1학년 2담임제』, 『1교장 1교사 근무지 상주제』
- 교외생활지도 상설캠프운영 : 유원지·휴양지 등 11개소 설치

### ○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교육

- 전 국토 청결의 날 : 매월 첫째주 토요일 / 환경보전의식 생활화
- 시범학교 운영 : 운영 결과 확산 / 쓰레기 분리 수거





(별첨3)

의안번호	제 59-1 호
의 결	1996. 1. .
연 월 일	( 제 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1996. 1. 4 .

법무담당부서 심사필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59-1
----------	------

제출연월일 : 1996. 1. 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사유

- 학교신설, 소규모초등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분교장개편, 분교장폐지,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교명변경과,
- 교육법 제8조, 제75조 및 제81조 등의 개정(법률 제5,069호. '95.12.29.)으로 "국민학교" 를 "초등학교" 로 명칭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신설 학교 (청원군 오창고등학교외 5교) : 덧붙임
- 분교장개편 학교 (청원군 기암국외 6교) : 덧붙임
- 분교장폐지 학교 (제천시 금성국 장선분교장외 8교) : 덧붙임
-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청주시 교동국민학교외 3교) : 덧붙임
- 교명변경 학교 (청주시 산남국민학교) : 덧붙임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 학교 (청주시 주성국외 311교):덧붙임
-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외 3건):덧붙임

### □ 제안근거

- 교육법 제8조, 제75조 및 제81조 등 ("국민학교" 를 "초등학교" 로 개정)
- 교육법 제82조(설립자) 및 교육법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 '96.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 조례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 법령 발췌서 : 덧붙임
- '96.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계획안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 덧붙임
- 예 산 상 황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중 "[별표1],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 충청북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고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34번지
충북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61-4번지
금 천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5-4번지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번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청 주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69번지
충 북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316-2번지
충북예술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번지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번지
충북체육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808번지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번지
충주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58번지
충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060번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충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72번지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453번지
주덕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번지
제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163-1번지
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80번지
제천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45번지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765번지
제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82-3번지
제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0번지
충북과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아리 산 4-23번지
미원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번지

명 칭	위 치
부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97-1번지
오창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보은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보은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71-2번지
보은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00번지
옥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15-4번지
옥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47번지
옥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청산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1번지
영동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번지
영동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2-1번지
황간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431번지
학산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7-3번지
진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번지
진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662-1번지
진천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광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20번지
괴산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
증평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증평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
목도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
음성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03-7번지
금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단양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번지
단산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단양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8번지

중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 주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8번지
주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3번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5번지
청주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7-5번지
청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74번지
청 운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73-48번지
울 량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1-6번지
용 암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1번지
원 봉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0번지
청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3번지
청 주 남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24-3번지
수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3번지
서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86-3번지
가 경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53-1번지
봉 명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305번지
남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5번지
충 주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92번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32-2번지
충 일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1083-4번지
충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69-1번지
충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1088번지
주 덕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번지
수안보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51번지
신 니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산 16-1번지
노 은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368번지

명 칭	위 치
양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옹포리 172번지
가 금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중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07-1번지
산 척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718-2번지
제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5-1번지
제천동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번지
제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71-1번지
의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9-2번지
봉 양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1리 864-1번지
청 풍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수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9번지
한 수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22번지
백 운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570번지
송 학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번지
미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번지
문 의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108-2번지
부 강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00번지
오 창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내 수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번지
가 덕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255번지
현 도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256-3번지
옥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77-3번지
보 은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30번지
보은여자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보 덕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27번지
원 남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번지
회 인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명 칭	위 치
속 리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내 북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1번지
옥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번지
옥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5-2번지
청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3번지
이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59번지
안 내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89번지
동 이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672번지
영 동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용 문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04번지
황 간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26-1번지
상 촌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학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7-3번지
진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번지
진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43번지
광혜원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12번지
덕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66번지
이 월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55번지
백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76-1번지
괴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2번지
괴산북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25번지
증 평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동 600번지
증평여자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연 풍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88번지
목 도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
청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5번지
송 면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명 칭	위 치
장 연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562번지
칠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240번지
감 물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번지
음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74-3번지
음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0-3번지
무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23-2번지
대 소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13-7번지
삼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31-1번지
감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90-3번지
단 양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번지
매 포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18번지
단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79-1번지
가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단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영 춘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496-1번지
영춘중학교 별방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초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용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상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석 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0번지
중 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청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덕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56번지
율 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34번지
우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7번지
덕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0번지
용 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번지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71-1번지
청주내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61번지
금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3-1번지
북 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28번지
운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번지
새 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한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60번지
남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서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복 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09-4번지
모 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72번지
운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43-7번지
흥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5번지

명 칭	위 치
창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번지
사 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4번지
강 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21-1번지
내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10-2번지
서 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83번지
현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89번지
봉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05번지
봉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141번지
한 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2번지
수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가 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52번지
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2번지
충주교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성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예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충주남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단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 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남 한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대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충주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연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세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세성초등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수 안 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명 칭	위 치
수 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수회초등학교 팔봉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64-1번지
대 소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이 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889번지
매 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주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2번지
덕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제내리 265-1번지
용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 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 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수 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양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58-1번지
양성초등학교 영죽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영죽리 264-4번지
강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89-2번지
능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 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창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산 22-2번지
가 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 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294-2번지
오 석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 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동량초등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대 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 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산척초등학교 석천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203번지
엄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추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455-6번지

명 칭	위 치
목 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 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야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야동초등학교 하남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645-1번지
동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8번지
의 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2동 255-12번지
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1번지
화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1동 606번지
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96-1번지
두 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 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8-1번지
제천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25번지
용 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신 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산30-1번지
봉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21번지
봉양초등학교 봉남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540번지
왕 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757번지
공 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265번지
금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청 풍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수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번지
수산초등학교 추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 175번지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
덕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유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606번지
송 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명 칭	위 치
백운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당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송학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64번지
입석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609-2번지
낭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08-1번지
낭성초등학교 갈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341-1번지
미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초등학교 용곡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291번지
미원초등학교 종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387번지
미원초등학교 기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251-1번지
금관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가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가덕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행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남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신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동화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361-1번지
두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남이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초등학교 소전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653-2번지
도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현도초등학교 노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
옥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명 칭	위 치
외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강 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 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번지
상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번지
만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옥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초등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옥산초등학교 금계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223번지
소 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 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가 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각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28-3번지
유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북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2번지
석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대 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1번지
비 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00번지
수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263-1번지
구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삼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동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종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학 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중 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수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명 칭	위 치
수정초등학교 법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210번지
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43번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관 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세 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종리 575-2번지
탄 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사 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보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5-5번지
삼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승 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승족리 192-4번지
수 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35번지
회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 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내 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내북초등학교 이식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84번지
내북초등학교 아곡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산 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2번지
장 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317번지
죽 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삼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군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군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83번지
동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동이초등학교 우산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안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명 칭	위 치
삼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510-1번지
안 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청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초등학교 모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19-1번지
능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화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청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청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675-1번지
이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14-7번지
지 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 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증 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 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화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4-1번지
용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13번지
구 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황 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1번지
용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황간면 용암리 642번지
노 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추 풍 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번지
매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천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 463-2번지
상 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명 칭	위 치
상촌초등학교 황학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01번지
양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21번지
미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용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학산초등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범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양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진천상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매산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성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이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 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 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한천초등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초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구정초등학교 오상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문 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 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백곡초등학교 성대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498-2번지

명 칭	위 치
만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상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 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신 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469번지
감 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장 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 풍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광 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 풍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오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04-1번지
칠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외 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청천초등학교 신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 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덕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어 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287-1번지
청 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백봉초등학교 장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증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 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 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명 칭	위 치
화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백 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번지
소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목 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세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214번지
수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평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무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86번지
용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50번지
오 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 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원남초등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하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 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 윤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번지
능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 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 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번지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번지

명 칭	위 치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감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상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 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원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단양초등학교 노동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4번지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상 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가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장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등학교 보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대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영 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별 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어 상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어상천초등학교 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 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도 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1리 63번지
가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적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대 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 참고사항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골자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96.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기준  
(분교장개편, 분교장폐지)

##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골자

### 1. 신설 학교 (6교)

명 칭	위 치	개교연월일	신 설 사유
오창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96. 3. 1.	- 청주·청원지역에서 증가하는 중학교 졸업생 수용  -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수용,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
원봉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0번지		
수곡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3번지		
용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상당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신백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산30-1번지		

### 2. 소규모학교 통폐합

#### 가. 본교에서 분교장개편 학교 (7교)

개편전명칭	개 편 후 명 칭	위 치	개편연월일
기암국민학교	미원초등학교 기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251-1	'96. 3. 1.
상야국민학교	가덕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351-1	
금계국민학교	옥산초등학교 금계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223	
오생국민학교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570	
금곡국민학교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107	
동대국민학교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806	
선암국민학교	어상천초등학교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69	



나. 분교장폐지 학교 (9교)

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노은국민학교 수룡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554-1	'96. 3. 1.	- 교육과정 조정 의 상 화  - 교육의 내 실 화 도 모  - 인 력 교 육 재 정 의 효 율 향 상
소태국민학교 덕은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229		
금성국민학교 장선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98		
청풍국민학교 금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상천리 산8-3		
덕산국민학교 월악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596		
낭성국민학교 산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277-1		
수성국민학교 입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425-1		
내북국민학교 이원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209		
명덕국민학교 제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289		

3.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4교)

학 교 명	구 분	위 치	사 유
용암중학교	부 여 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택지개발지구 내 (73BL)	택지개발지구 지적 정리로 지번부여
	부 여 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1번지	
교동초등학교	부 여 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택지개발지구 내 (72BL)	
	부 여 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수곡초등학교	부 여 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산남(2)택 개발지구내 (12BL)	
	부 여 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용두초등학교	부 여 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택지개발지구내	
	부 여 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 4. 교명변경 학교 (1교)

현행 학교명	변경 학교명	변경연월일	사 유
산남국민학교	한솔초등학교	'96. 3. 1.	행정구역인 수곡동과 학교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교명변경을 요구함.

#### 5. "국민학교" 를 "초등학교" 로 명칭변경 학교 (311교)

본 교	분 교 장	계	사 유
272교	39교	311교	교육법 제8조, 제75조, 제81조 등의 개정(법률 제5,069호. '95.12.29.)으로 "국민학교" 를 "초등학교" 로 명칭변경함.

#### 6. 다른 조례의 개정 (4건)

개 정 조 례 명	사 유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교육법 제8조, 제75조, 제81조 등의 개정(법률 제5,069호. '95.12.29.)으로 "국민학교" 를 "초등학교" 로 "국민학생" 을 "초등학생" 으로 개정함.
충청북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충청북도중 ·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자(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는 중 ·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민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중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 2 ~ 5 (생략) 제3조 ~ 제9조 (생략)		제명 : 충청북도중 ·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 . 1. <u>초등학교</u> . . . . . . . . . . . . . . .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명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2조 (강사자격) 학원의 설립 · 경영자는 영 별표3의 강사자격 기준중 일반학원 강사자격 기준중 제8호에 의한 "교육법 제7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자격자 : 국민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사(전공과목이 있을 때에는 전공과목 우선)		제명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강사자격) . 1. . . . . : 초등학생 . . . . . . . . . . . . . . .		

< 별표 1 >

## 고등학교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청주여자고등학교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534번지	..... .....	..... .....
부강공업고등학교 (신설)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97-1번지	..... <u>오창고등학교</u>	..... <u>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u>
(생략)	(생략)	.....	.....



## 중학교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청 주 중 학 교 (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8번지 략)	.....	.....
용 암 중 학 교 (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택지개발지구 내 (73BL) 설)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1번지
(생	략)	<u>원 봉 중 학 교</u>	<u>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0</u>
청 주 남 중 학 교 (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24-3번지 설)	.....	.....
(생	략)	<u>수 곡 중 학 교</u>	<u>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3번지</u>
		.....	.....

## 초등학교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주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주 성 초 등 학 교	.....
교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택지개발지구 (72BL)	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신 설)	(신 설)	용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신 설)	(신 설)	상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생 략)	(생 략)	.....	.....
산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2번지	한 솔 초 등 학 교	.....
수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산남(2)택지 개발지구내 (12BL)	수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생 략)	(생 략)	.....	.....
노 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554-1번지	(삭 제)	(삭 제)
수 룡 분 교 장	(생 략)	.....	.....
(생 략)	(생 략)	(삭 제)	(삭 제)
소 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229번지	.....	.....
소 태 은 분 교 장	(생 략)	.....	.....
(생 략)	(생 략)	.....	.....
용 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택지개발지구내	용 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신 설)	(신 설)	신 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산30-1번지
(생 략)	(생 략)	.....	.....
금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98번지	(삭 제)	(삭 제)
금 성 장 선 분 교 장	(생 략)	.....	.....
(생 략)	(생 략)	.....	.....

현		개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청풍국민학교 금산분교장 (생)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산8-3번지 략)	(삭)	제)
덕산국민학교 월악분교장 (생)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596번지 략)	(삭)	제)
낭성국민학교 산동분교장 (생)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277-1번지 략)	(삭)	제)
기암국민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251-1번지 략)	미원초등학교 기암분교장	
상야국민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략)	가덕초등학교 상야분교장	
금계국민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223번지 략)	옥산초등학교 금계분교장	
수성국민학교 입동분교장 (생)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425-1번지 략)	(삭)	제)
내북국민학교 이원분교장 (생)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번지 략)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덕 국민 학교 제 월 분 교 장 (생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89번지  략)	(삭	제)
오 생 국민 학교 (생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략)	생 극 초 등 학 교 오 생 분 교 장	.....
금 곡 국민 학교 (생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략)	단 양 초 등 학 교 금 곡 분 교 장	.....
동 대 국민 학교 (생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략)	영 춘 초 등 학 교 동 대 분 교 장	.....
선 암 국민 학교 (생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략)	어 상 천 초 등 학 교 선 암 분 교 장	.....



현행	개정안
<p>2. (생략)</p> <p>제13조 ~ 제21조 (생략)</p> <p>제명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p> <p>제1조 (생략)</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제2청·소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 ( <u>국민학교</u> ,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 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 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 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3조 ~ 제57조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13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p> <p>제명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정의) . . . . .</p> <p>.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p> <p>( <u>초등학교</u> , .</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 ~ 제57조 (현행과 같음)</p>
<p>제명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p> <p>제1조 (생략)</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제2청·소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 ( <u>국민학교</u> ,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 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p>	<p>제명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정의) . . . . .</p> <p>.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p> <p>( <u>초등학교</u> . . . . .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 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3조 ~ 제36조 (생략)</p>	<p>.....</p> <p>.....</p> <p>.....</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서

## □ 교육법

- 제8조, 제75조 및 제81조 등의 개정으로 "국민학교" 를 "초등학교" 로 명칭변경

- 명칭변경 배경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써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육법에 명시한 "국민학교" 를 "초등학교" 로 개정함.

- 제82조(설립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 '96.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 □ 학교신설 계획안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주택건설로 인한 급격한 교육인구의 이동으로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대학교를 분리하고, 청주·청원지역에서 증가하는 중학교 졸업생 수용을 위하여, '96.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초등 학교는 청주 2개교, 제천 1개교, 중학교는 청주 2개교, 고등학교는 청원 1개교의 신설요인 발생.

### □ 소규모초등학교 통폐합 기준 【근거 : 시·도교육청 의무교육계장 회의자료('95. 2.24.)】

#### ○ 통폐합

- 분교장은 지역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되, 3복식수업 대상학교는 우선 통폐합

#### ○ 분교장

- 전학년 3학급이하일 경우 본교로써의 기능이 미약하므로 분교장개편 추진

#### ○ 우리도 기본원칙 : 1面 1校 유지





(별첨4)

의안번호	제 59 - 2 호
의결 년 월 일	1996. 1. ( 제 회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6. 1. 4.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의 번	안 호
	59-2

### □ 개정사유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95. 12. 14.)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안 제17조 1항).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  
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6호 및 7호).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제4호).
-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2조제6항).

### □ 개정근거

-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825호, 1995. 12. 14.)

### □ 조 례 안 : 덧붙임

###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체서 : 덧붙임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제1항중 “그 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를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로 하며 제2항중 “당직근무에”를 “당직 및 비상근무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의 연가일수란중 “3일”을 “4일”로, “8일”을 “10일”로, “11일”을 “13일”로, “14일”을 “16일”로, “17일”을 “19일”로, “20일”을 “22일”로 하고, 근속기간란중 “5년이상”을 “5년이상 6년미만”으로 하며, 동표의 근속기간란에 “6년이상”을, 연가일수란에 “23일”을 각각 신설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제1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고,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제1항중 “휴가률”을 “경조사휴가률”로 하고, 제2항중 “휴가률”을 “출산휴가률”로 하며, 제3항중 “생리휴가률”을 “여성보건휴가률”로 하고, 제4항중 “휴가률”을 “수업휴가률”로 하며, 제5항중 “특별휴가률”을 “포상휴가률”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제22조제6항중 “휴가률”을 “퇴직준비휴가률”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교육감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본문중 “공무원복무규정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참 고 자 료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제5조(생략)</p> <p>제6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제12조(생략)</p> <p>제13조(근무시간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16조(생략)</p> <p>제17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조~제5조(현행과 같음)</p> <p>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p> <p>.....</p> <p>.....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p> <p>.....</p> <p>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제12조(현행과 같음)</p> <p>제13조(근무시간등의 변경) .....</p> <p>.....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p> <p>제16조(현행과 같음)</p> <p>제17조(연가일수) ①.....</p> <p>.....</p>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20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u>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④공무원에 대하여 <u>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같음할 수 있다.</u></p> <p>제19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u>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②(생략)</p> <p>제20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③(생략)</p> <p>제21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p>	<p>② ..... ..... ..... <u>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p> <p>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 휴직일수 ·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20조(병가) ① ..... .....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21조(공가) ..... ..... .....</p>



현행	개정안
<p>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u>참가하려 할 때</u></p> <p>2.(생략)</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u>참가하려 할 때</u></p> <p>4~5(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6.(생략)</p> <p>제22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u>생리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u>특별휴가</u>를 허가할 수 있다.</p>	<p>1. .... ..... ..... <u>참가할 때</u></p> <p>2.(현행과 같음)</p> <p>3. ....<u>참가할 때</u></p> <p>4~5(현행과 같음)</p> <p>6. <u>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p> <p>7. <u>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u></p> <p>8.(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22조(특별휴가) ① .....</p> <p>..... <u>경조사휴가</u>를 .....</p> <p>.....</p> <p>② .....</p> <p>..... <u>출산휴가</u>를 .....</p> <p>.....</p> <p>③ .....</p> <p><u>여성보건휴가</u>를.....</p> <p>④ .....</p> <p>.....</p> <p>..... <u>수업휴가</u>를 .....</p> <p>⑤ .....</p> <p>.....</p> <p>..... <u>포상휴가</u>를.....</p>

현행	개정안
<p>1~3(생략)</p> <p>(신 설) (신 설)</p> <p>⑥법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 66조 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3조~제26조(생략)</p> <p>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u>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u></p> <p>제28조(생략)</p>	<p>1~3(현행과 같음)</p> <p>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⑥ 교육감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p> <p>.....퇴직준비휴가를 .....</p> <p>제23조~제26조(현행과 같음)</p> <p>제27조(준용).....</p> <p>.....<u>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u> .....</p> <p>제28조(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기타 사고외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버부언,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첨5)

의안번호	제 59-3 호
의 년 월 일	1996. (제 회)

##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6. 1. 4.

# 용암여자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의안 번호	59-3
----------	------

제출년월일 : 1996. 1.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설립목적

- 청주지역의 중학교 여자졸업생 수용
- 고등보통교육 실시

## □ 주요내역

- 학 교 명 : 용암여자고등학교(龍岩女子高等學校)
- 설 립 자 : 충청북도(忠淸北道)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번지
- 개교예정일 : 1997. 3. 1.
- 설치학과 및 학급수
  - 학 과 명 : 보통과
  - 학년당학급 : 10학급
  - 완성 학급 : 30학급
- 부지확보
  - 용암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시설결정된 고등학교 용지
  - 부지면적 : 13,745.8㎡
- 소요예산 ('96년기준) : 9,065백만원
  - ┌ '95년 : 160백만원
  - ├ '96년 : 3,548백만원
  - └ '97년 : 5,357백만원
-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자체재원 및 교부금으로 충당

##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교육법 제82조 제1항 (설립자)
  - 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생수용계획)

## 연도별 시설확보계획

(단위: m<sup>2</sup>)

구 분	총 계		'96		'97		비 고
	실수	면 적	실수	면 적	실수	면 적	
보 통 교 실	30	2,700	15	1,350	15	1,350	
관 리 실	5	450	5	450			
소 회 의 실	1	90			1	90	
교직원휴게실	1	90			1	90	
특 별 교 실	13.5	1,215	8.5	765	5	450	
특수 활동실	7	630	2.5	225	4.5	405	
보건 위생실	4	360	3	270	1	90	
부 속 시 설	12동		8동		4동		

##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연 도 별 확 보 계 획				비 고
	계	'95	'96	'97	
건축 공사	3,684,500		2,050,000	1,634,500	
토목 공사	603,980		527,480	76,500	
기타 시설	280,800		225,900	54,900	
부 대 비	242,509	160,009	45,000	37,500	
토지매입비	4,253,570		700,000	3,553,570	
합 계	9,065,359	160,009	3,548,380	5,356,970	



# 용암여고 위치도



# 용암여고 지적도

